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05. 2. 21.
제 안 자 : 정상혁의원 외

▢ 수정 이유

○ 행정기구의 잦은 명칭변경으로 인한 도민의 혼선을 최소화하면서 보다 현실적이고 명칭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국 및 국장의 명칭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한편,

○ 업무분장사항 또는 업무소관이 불분명한 것을 구체적이고 명확히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성 등을 제고하고자 함.

▢ 수정 주요내용

○ 과단위업무 분리에 따른 관장업무 구체화(안 제7조제9호)

- 예산의 지출·결산업무
  → 예산의 지출·결산 등 회계업무

○ 자치행정국 업무소관이 불분명한 업무 명확히 구분

- 비상대책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11호)

○ 국 및 국장명칭 변경 혼란방지를 위해 현행대로 사용
(안 제5조, 안 제12조, 안 부칙 제2조)

- 건설방재국 → 건설교통국
- 건설방재국장 → 건설교통국장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5조중 "건설방재국"을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건설교통국"으로 한다.

안 제7조중 제9호 및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11호는 제12호로 한다.

9. 예산의 지출·결산 등 회계업무

11. 비상대책에 관한 사항

12. 노근리사건실무지원단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의 제목 "(건설방재국)"을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건설교통국)"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건설방재국장"을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안 부칙 제2조중 제2항, 제4항내지 제6항, 제8항을 삭제하고, 제3항을 제2항으로 하되, 동항을 다음과 같이하고, 제7항을 제3항으로 제9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②충청북도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중 "안전관리과장"을 "재난관리과장"으로, "안전관리담당"을 "총괄담당"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5조(실·국·본부의 설치) 도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관리실, 자치행정국, 경제통상국, 복지환경국, 농정국, 문화관광국, **건설교통국**, 소방본부를 둔다.	제5조(실·국·본부의 설치) …… …… …… ……건 **설방재국**……	제5조(실·국·본부의 설치) …… …… …… ……건 **설교통국**……
제6조(기획관리실) 기획관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9. (생 략) **10. 행정혁신,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등에 관한 사항**	제6조(기획관리실) …… …… 1. ~ 9. (현행과 같음) **10. 정보통신 및 행정전산화에 관한 사항**	제6조(기획관리실) (개정안과 같음)
제7조(자치행정국) 자치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8. (생 략) **9. 예산의 지출·결산 업무** **10. 정보통신 및 행정전산화에 관한 사항** **11. 민방위비상대책에 관한 사항** **12. 노근리사건실무지원단 운영에 관한 사항**	제7조(자치행정국) …… …… 1.~8. (현행과 같음) **9. (현행과 같음)** **10. 행정혁신 및 지방분권 등에 관한 사항** **11. 노근리사건실무지원단 운영에 관한 사항** <삭 제>	제7조(자치행정국) …… …… 1.~8. (개정안과 같음) **9. 예산의 지출·결산 등 회계업무** **10. (개정안과 같음)** **11. 비상대책에 관한 사항** **12. 노근리사건실무지원단 운영에 관한 사항**
제12조(**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5. (생 략) <**신 설**> **6.~ 12.** (생 략)	제12조(**건설방재국**) **건설방재국장**…… …… 1.~ 5. (현행과 같음) **6. 민방위에 관한 사항** **7.~ 13.** (현행과 같음)	제12조(**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장**…… …… 1.~ 5. (개정안과 같음) **6. (개정안과 같음)** **7.~ 13.** (개정안과 같음)
부칙(조례 제2819호) 제1조(시행일) (생 략) 제2조(한시기구) **기획관리실 혁신분권담당관**의 존속기한은 2007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 자치행정국 노근리사건실무지원단의 존속기한은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조례 제2819호) 제1조(시행일) (현행과 같음) 제2조(한시기구) **자치행정국 혁신분권과**…… …… …… …… ……	부칙(조례 제2819호) 제1조(시행일) (개정안과 같음) 제2조(한시기구) (개정안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부 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개정안과 같음)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개정안과 같음)
	②충청북도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건설교통국장"을 "건설방재국장"으로 한다.**	**<삭 제>**
	③충청북도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건설교통국장"을 "건설방재국장"으로,** "안전관리과장"을 재난관리과장"으로, "안전관리담당"을 "총괄담당"으로 한다.	②…… …… ……**(삭제)** …… …… ……
	④충청북도재해영향평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중 "건설교통국장"을 "건설방재국장"으로 한다.**	**<삭 제>**
	⑤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건설교통국장"을 "건설방재국장"으로 한다.**	**<삭 제>**
	⑥충청북도지명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건설교통국장"을 "건설방재국장"으로 한다.**	**<삭 제>**
	⑦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중 "세무회계과"를 "회계과"로 한다. 제30조중 "세무회계과장"을 "회계과장"으로 한다.	③ (개정안과 같음)
	⑧충청북도지역혁신협의회등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중 "건설교통국장"을 "건설방재국장"으로 한다.**	**<삭 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⑨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권한위임사무중 세무회계과 소관 일련번호 제1호 내지 제4호를 세정과 소관 일련번호 제1호 내지 제4호로 하고, 세무회계과 소관 제5호 내지 제7호를 회계과 소관 제1호 내지 제3호로 하며, 분야별 란의 "안전관리과"를 "민방위안전관리과"로 한다.	④ (개정안과 같음)

□ 충청북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3조(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② (생 략) ③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1. 총무담당·민방위담당 간사 : 자치행정국장** 2. 심리전담당간사 : 공보관	제3조(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② (현행과 같음) ③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1. 총무담당·비상기획담당간사 : 자치행정국장** 2. 심리전담당간사 : 공보관	제3조(협의회 구성 및 운영) (개정안과 같음)

□ 충청북도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5조(회계공무원) ① (생 략) ②기금운용관은 **건설교통국장**으로, 기금분임운용관은 **안전관리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안전관리담당**으로 한다.	제5조(회계공무원) ① (현행과 같음) ②…… **건설방재국장**…… …… **재난관리과장**… …… **총괄담당**… ……	제5조(회계공무원) ① (개정안과 같음) ②…… **건설교통국장**…… …… **재난관리과장**… …… **총괄담당**… ……

□ 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28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① (생 략) ②물품의 매입, 수리, 수선, 기타의 검사 또는 검수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행하고 **세무회계과** 관계공무원이 입회한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경리관이 따로 검사 또는 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생 략)	제28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① (현행과 같음). ②…… …… …… ……**회계과** …… …… …… ③ (현행과 같음)	제28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개정안과 같음)
제30조(물품출납사무의 사고보고) 물품출납원은 그 소관물품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기재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세무회계과장**을 경유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30조(물품출납사무의 사고보고) …… …… ……**회계과장** ……	

□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

[별표1]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분야별	일련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분야별	일련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분야별	일련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세 무 회계과	**1~4**	(생 략)		**세정과**	**1~4**	(현행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세 무 회계과	**5~7**	(생 략)		**회계과**	**1~3**	(현행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안 전 관리과		(생 략)		**민 방 위 안전관리 과**		(현행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